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95
----------	------

2023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자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353억 1천만원(2024년)
 - ① 노후열수송관 교체: 240억 5천만원
 - ②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75억원
 - ③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37억 8천5백만원

사업명	소계	기출자				'23년	'24년	'25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499	86	160	140	215	379	353	1,166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	-	-	59	200	240	160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1,764	86	160	140	156	179	75	968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76	-	-	-	-	-	38	38

□ 출자 필요성

- 노후화 및 이상 징후 발생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 '24년 노후 열수송관 8.0km 교체 등 '26년까지 41.6km 교체
-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19년부터 출자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건설 사업에 '24년도에도 출자
 - 총 사업비 5,291억원 중 1,764억원은 시비로 연차별 분할 출자하고 나머지 3,527억원은 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
 - ※ 시비 총액 1,764억원은 제308회(22.5월) 정례회 기 동의

- 난방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사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7만여 세대에 난방비 38억원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② ~ ③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제27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5. 생략
 -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9. 생략
 -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나. 예산조치: '24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출자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과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1조원 내에서 서울에너지 공사에 현금('24년 353억 1천만원)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서울시 출자 현황 및 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소계	기출자				'23년	'24년	'25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499	86	160	140	215	379	353	1,166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	-	-	59	200	240	160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1,764	86	160	140	156	179	75	968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76	-	-	-	-	-	38	38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 출자를 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출자 대상에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총 353억 1천만원을 출자 계획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총 출자 규모는 1,764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최초 계획은 2022년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5년까지로 일정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동 사업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의 건설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는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공사는 시 출자금을 제외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 규모는 최초 1,764억원에서 3,52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의 고금리를 고려한다면 이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관련 사업비 확보계획(안)〉

(단위: 억원, '23년 8월 기준)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27년
총사업비	5,291	86	160	140	156	179	75	2,200	2,295
시 출자금	계획	1,764	86	555	732	391	-	-	-
	실제	1,764	86	160	140	156	179	75	968
공사차입금 (공사채발행)	사전승인	3,527	-	-	773	-	-	3,527	-
	발행예정	3,527	-	-	-	-	-	-	1,232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관련 출자동의안 출자 계획 및 시행 변경 현황〉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열수송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열수송관 41.6km 구간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하여 진단·이설 및 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임.

2024년에는 8.0km 구간의 교체(진단 71km 포함)를 위해 24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서남권(목동 등)과 동북권역(노원 등)의 관로 교체(이설)에 158억 3천4백만원, 지점 보수(교체)에 57억 1천6백만원, 열수송관 진단 등에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동 사업은 출자금액을 2023년, 2024년 큰 폭으로 늘려 정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열수송관 교체의 경우 공사 기간에 제약²⁾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리적인 공기관리를 통해 계획한 기한 내에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추진(예정) 현황〉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 고
진단구간(km)	265	20	174	71	-	-	관경/굴착 난이도 등에 따라 소요 예산 차이 발생
교체구간(km)	41.6	3.4	9.1	8.0	9.4	11.7	
출자금(억원)	659	59	200	240	74	86	

2) 우기 또는 동계 난방열 공급 시 공사 중단

<2024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추진(예정) 현황>

구분	대상구간(지역)	관경(A)	배관길이(m)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서남권	목동 - 신정지구	200	1,800	2,144	관로 교체 또는 이설
	방화 주배관1	450	600	1,067	
	목동	300~40	560	772	지점 보수 또는 교체
	가양동	600~65	500	948	
	방화동	400~50	320	488	
	발산동	300	60	114	
	등촌동	600~125	170	336	
	화곡동	250~150	160	258	
합 계		-	4,170	6,127	
동북권	노원·도봉·중랑 등	750~25	220	2,800	지점 보수
	북단 하천·도로부	700~200	3,654	12,623	관로 대체(하천횡단 등 특수구간)
합 계		-	3,874	15,423	
서남·동북권 전체		-	-	2,500	진단, 비파괴 등
총 계		-	8,044	24,050	

-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그간에는 공사 자체 예산으로 열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예산 37억 8천5백만원 전액을 출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세부적으로 3억 5천만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5,500세대에 정액 지원하고, 12억 6백만원을 임대아파트(60m² 이하) 63,516세대의 기본요금 감면, 22억 2천9백만원을 임대아파트 64,631세대의 열사용요금 감액에 활용할 예정임.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출자 대상에 동 사업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 예산 편성 계획〉

구 분	세대수	예산(백만원)	비 고
열요금 지원	5,200	350	'22년 지원세대수 대비 4% 증가
기본요금 감면	63,516	1,206	'22~23년 지원세대수 기준
열사용 요금 감액	64,631	2,229	
합 계		3,785	

〈2023년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구 분	세대수	지원 대상 및 내용	
		일반지원	특별지원('23년 한시)
열요금 지원	5,500	수급권자(10천원/월), 차상위계층(5.5천원/월)	최대 592천원 지원
		유공자(6.5천원/월), 장애인(4.5천원/월) 다자녀가구(면적비례 경감)	지원액 상향(100%) ※'22년 12월~'23년 3월분
기본요금 감면	63,516	임대아파트(60㎡이하), 사회복지시설	-
열사용요금 감액	64,631	임대아파트(열사용요금 10%)	-
소요예산		3,785백만원	1,870백만원

〈2020~2022년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세대수	예산(백만원)	세대수	예산(백만원)	세대수	예산(백만원)
열요금지원	6,413	345	5,774	319	5,006	282
기본요금 감면	61,233	1,171	63,516	1,206	63,516	1,206
사용요금 할인	61,992	1,864	64,631	1,832	64,631	2,229
소요예산		3,380		3,357		3,717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195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 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35,310백만원('24년)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4,050백만원
 -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2단계) : 7,500백만원
 -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 3,785백만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계	기출자				'23년	'24년	'25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499	86	160	140	215	379	353	1,166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	-	-	59	200	240	160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1,764	86	160	140	156	179	75	968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76	-	-	-	-	-	38	38

나. 출자 필요성

- 노후화 및 이상 징후 발생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 '24년 노후 열수송관 8.0km 교체 등 '26년까지 41.6km 교체
-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19년부터 출자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건설 사업에 '24년도에도 출자
 - 총 사업비 5,291억원 중 1,764억원은 시비로 연차별 분할 출자하고 나머지 3,527억원은 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
 - ※ 시비 총액 1,764억원은 제308회('22.5월) 정례회 기 동의
- 아울러 난방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사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시비 출자하고자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7만여 세대에 난방비 38억 지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7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략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장 수(☎ 2133-3556)